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90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신장식 · 김선민 · 이해민  
차규근 · 서왕진 · 김재원  
박은정 · 강경숙 · 백선희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주도로 지정된 국가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 경북, 충북 오송 등)를 중심으로 조성 ·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헬스 및 첨단의료산업이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고유의 의료 인프라와 AI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기술을 결합한 유연한 발전 모델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란 지역별 특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가와 지역단위 단지 간의 협력)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의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u></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u>&lt;신설&gt;</u></p> <p>2. ~ 8. (생략)</p> <p><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u>“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란 지역별 특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u></p> <p>2. ~ 8.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의2(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u></p> <p><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u></p>

<신 설>

거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국가와 지역단위 단지 간의 협력)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의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